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오토캠핑장내 전기시설 설치로 인해 시설사용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 발생이 빈번,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현행 시설사용료와 감면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

⑴ 시설사용료 정비(안 제4조)

· 별표 1의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

- 2018년 5월 오토캠핑장 전기시설 설치 → 인상 요인 발생

- 5인 기준 일행 초과 입장 시 입장료 징수 근거 마련

⑵ 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감면 정비(안 제6조)

· 제6조제1항제2호 감면 범위에 대한 후단 신설

· 제6조제1항제3호 다자녀 혜택 전국 → 성주군민으로 축소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관광진흥법」 제3조, 제20조의2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9. 6. ~ 9.26.)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6867(2018. 9. 4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7576(2018. 8.24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전기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를 인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폭넓은 감면규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우리군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